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37
----------	------

2022년 3월 28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16일
다. 상정일자: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년 3월 28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 가. 제안이유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일관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이 정한 서울형 정비지원계획 상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건축심의회와 통합하여 심의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14조).
-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1조 및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22.1.20.~2.9.) 결과: 별도 첨부
-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일관된 운용을 도모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환경·건축·교통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생략) ②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개요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당해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으로,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제도임.
- 서울시는 현재 11개 분야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도시 특성상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나 건축물 건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은 총 39건, 이중 재개발·재건축사업이 26건으로 6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3%는 대학·병원·업무시설 등의 건축물 건축사업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개요>

항 목	내 용
대상사업	11개 분야 26개 사업 01.도시개발 02.산업단지, 03.에너지개발, 04.도로, 05.철도, 06.하천개발, 07.관광단지 08.산지개발, 09.체육시설, 10.폐기물처리시설, 11.군사시설
평가주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자
평가항목	6개 분야 20개 항목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13개 항목] - 대기환경: <u>기상</u> , <u>대기질</u> , 악취, 운실가스 - 수환경: <u>수질</u> , 수리·수문 - 토지환경: <u>토지이용</u> , <u>토양</u> , <u>지형·지질</u> -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 <u>자원순환</u> , <u>소음·진동</u> , <u>위락·경관</u> , <u>일조장해</u> , <u>위생·공중보건</u> , <u>전파장애</u> - 사회경제: <u>인구</u> , <u>주거</u> , <u>산업</u>
평가절차	1단계: 작성계획서 제출→전문기관 →통보(건축물, 정비사업은 생략) 2단계: 평가서(초안) 제출→전문기관 등 검토→심의회 개최→통보 3단계: 평가서 제출→심의위원 등 검토→심의회 개최→통보 →(조건부 동의 시)보완서 제출→검토→(재보완 시)재보완서 제출→검토→통보
협의시기	사업계획 승인 전
심의기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사후관리	연 1회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

<최근 3년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현황>

(평가서 본안 접수기준, 단위: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0	18	11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4 (40%)	15 (83%)	7 (64%)	
그 외	대학, 병원	3	2	1
	업무시설 등	3	1	3

2) 서울형 정비지원계획

-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은 '21년 9월에 개정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근거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으로 정책

브랜드 명칭은 ‘신속통합기획’임.

동 계획은 ①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②신속한 심의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며, ③혁신된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중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사업 기간 단축 부분임.

그간 일정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건축·환경 영향평가를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각 심의위원회 간 의견 차이에 따른 사업 혼선이 발생하여, 심의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서울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약 5개월의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¹⁾한 바 있음.



- 현재 기준으로 동 계획의 대상지는 총 52개소이고, 이 중 통합심의 대상은 13개소(환경+건축+교통: 9개소, 환경+건축: 4개소)로 25%를 차지하고 있음.

1) 신속통합기획(서울특별시, 2021.10)

<서울형 정비지원계획 사업 중 통합심의 대상 현황>

대상지	통합심의		통합심의 제외		
	환경+건축+교통	환경+건축	국가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기 인가완료
52개소	9	4	20	16	3
비고	연면적 10만㎡ ↑ (사업면적 5만㎡ ↓)	연면적 10만㎡ ↑ (사업면적 5만㎡ ↑)	·일 반(2): 사업면적 30만㎡ ↑ ·소규모(18): 사업면적 6만㎡ ↑	연면적 10만㎡ ↓	-

3) 검토의견

- 안 제14조제2항 단서조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하던 환경·건축·교통 심의 절차를 통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의 단축과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대도시 특성상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대부분이 시민들의 자산 및 주거환경과 직결된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며, 그동안 정비사업자 중 상당수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완 및 재보완 절차를 거치는 등 오랫동안 평가²⁾받아온 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심의를 건축 부문과 명목상 같은 위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한 환경 부문에 대한 제대로 된 영향평가를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안 제21조는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과 조례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음.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조례 반영 사항>

구 분	현행	개정안
협의 전 공사시행 금지	절차가 끝나기 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
평가대상 사업자 범위	(신설)	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

2) 평가 기간: 최소 98일에서 최대 378일 (초안 검토, 평가서 본안 협의 및 사업자 보완을 포함한 기간, 환경정책과 추정치임)

붙임 1. 서울형 정비지원계획 대상지: 52개소

통합심의대상지(예상)

연번	자치구	구역명(가칭)	면적(m ²)	연번	자치구	구역명(가칭)	면적(m ²)
1,2	종로구	공평15/16지구	12,860	28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	34,879
3	종로구	창신동 23/송인동 56	84,354	29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299
4	중 구	을지로3가구역 6지구	4,156	30	동작구	흑석11구역	70,238
5	중 구	신당동236-100	51,604	31	동작구	상도14구역	50,142
6	용산구	청파 2구역	83,788	32	관악구	신림1구역	218,783
7	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73,735	33	관악구	신림7구역	75,600
8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18,749	34	강남구	압구정1구역	81,454
9	광진구	신향빌라	15,758	35	강남구	압구정2구역	172,588
10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27,981	36	강남구	압구정3구역	360,187
11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58,540	37	강남구	압구정4구역	108,050
12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79,756	38	강남구	압구정5구역	65,736
13	강북구	미아4-1구역	51,625	39	강남구	대치 미도	195,080
14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12,124	40	강남구	개포 우성, 현대, 경남	110,558
15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10,619	41	서초구	신반포 2차	85,331
16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33,854	42	서초구	신반포 4차	92,922
17	노원구	상계5동 일대	192,670	43	서초구	서초 진흥	38,671
18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13,004	44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106,095
19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71,860	45	송파구	장미1,2,3차	343,266
20	마포구	공덕동 A	82,320	46	송파구	송파 한양2차	57,386
21	양천구	신정동1152	44,082	47	송파구	마천5구역	106,101
22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115,699	48	강동구	천호3-1	20,676
23	강서구	방화2구역	34,906	49	강동구	천호3-2	19,292
24	구로구	구로 우신빌라	50,691	50	강동구	천호3-3	24,243
25	구로구	가리봉2구역	37,672	51	강동구	고덕 현대	37,658
26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38,859	52	강동구	천호A1-2구역	30,154
27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	109,046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를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임.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137
----------	------------

제안년월일: 2022년 3월 28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를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골자

-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를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2항의 단서 중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p> <p>① (생 략)</p> <p>②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p> <p>③ ~ ④ (생 략)</p>	<p>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u>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p> <p>----. -----</p> <p>---- <u>정비사업</u>-----.</p> <p>③ ~ ④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 및 제13조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p>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3) 시장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p>	<p>○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전</p> <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p> <p>○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계획의 승인 전</p> <p>○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p> <p>○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p> <p>○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p> <p>○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p>
2. 산업입지 및 공업 단지의 조성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 전</p>
2. 산업입지 및 공업 단지의 조성	<p>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p>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p>
3. 에너지 개발	<p>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45kW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km 이상 10km미만인 것 <p>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미만인 것</p> <p>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p> <p>○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p> <p>○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p>
4. 도로의 건설	<p>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km 이상 4km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왕복 2차로 이상으로서 5km 이상 10km 미만의 확장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 전)</p>
5. 철도의 건설	<p>「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 1km 이상 2km 미만인 것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 2km 이상 4km 미만인 것 	<p>○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p>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	<p>「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가 3km 이상 10km 미만인 것. 다만, 하천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방보강공사는 제외한다.</p>	<p>○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협의완료 또는 승인 전. 다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심의 전</p>
7. 관광단지의 개발	<p>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p>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p> <p>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허가 또는 신고 전</p> <p>○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 전(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 전)</p> <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p>
8. 산지의 개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6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9.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단, 용지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이 5천㎡ 이상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p>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p> <p>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 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p>	○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폐기물처리업 외의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16만5천㎡ 이상 33만㎡ 미만인 것	○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전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사업규모는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 나. 사업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르면 때. 다만, 사업의 인가·

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다.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 2)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해당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라.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받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위 표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5.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6.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사업의 경우 위 표 제1호자목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생 략) ②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 제 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p> <p>③ ~ ④ (생 략)</p> <p>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 략) ② ~ ④ (생 략)</p> <p>[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4조 및 제1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r>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구분</td> <td style="width: 25%;">대상사업의 범위</td> <td style="width: 70%;">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d></td> </tr> </table> <p><비고> 1. ~ 3. (생 략) 4. (생 략)</p>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생 략)		<p>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4조 및 제1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r>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구분</td> <td style="width: 25%;">대상사업의 범위</td> <td style="width: 70%;">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td> </tr> </table> <p><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p>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현행과 같음)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생 략)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현행과 같음)												

가. (생략)

나. 사업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 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르면 때. 다만,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 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 (생략)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르면 때

2) (생략)

라. (생략)

5. (생략)

6.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_____

_____ 사업 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와의 _____

다. (현행과 같음)

1) _____

_____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와의 _____

2)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